

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0,790,711	10,523,721
일반회계	342,901,082	10,287,032
특별회계	7,889,629	236,689
기타특별회계	7,889,629	236,689
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	588,828	17,665
주차장운영특별회계	7,300,801	219,024

제 2 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「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」와 같다.

제 3 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「명시이월사업조서」와 같다.

제 4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,632,74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내시된 예산(특별교부세, 자원조정교부금, 국·시비보조금 등)은 2015년 1월 부터 성립전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에 반영한다.